

프랑스 遞信金融의 現況과 電算化

目 次

- I. 머릿글
 - II. 체신금융의 개요
 - III. 체신금융의 현황
 - IV. 체신금융의 전산화
 - V. 전산화와 서비스개선
 - VI. 맺음글(우체국의 정보화)
- 부록 : 프랑스 민간금융기관 전산화의 배경

I. 머릿글

체신금융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체신예금은 1861년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최초로 그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다른나라들의 체신예금제도는 대부분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시작되었다. 오늘날 주요국가 중 체신예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브라질 등 소수이다. 그중 미국과 캐나다는 체신예금제도가 있었으나 1966년과 1968년에 각각 폐지되었는데, 그것은 민간저축기관들과의 경쟁에 의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체신금융은 나라에 따라 제도나 내용이 각기 다르나 각국의 체신예금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제도시행의 목적이 소액저축의 보호와 근검정신의 확산에 있다.

둘째, 전국의 우체국을 통하여 취급하여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예금원금 및 이자의 지불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한다.

넷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감면 등의 우대가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개인대부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체신예금의 경영주체는 체신부(한국, 일본,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재무부(인도, 파키스탄 등), 독립공법인(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인도네시아, 그리스 등)의 세부류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체신부가 경영주체인 경우에도 그 자금의 운용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체신예금자금의 운용은 국가에 의하여 직접 체신부가 하는 경우(한국, 서독, 네델란드, 뉴질랜드 등), 재무부가 하는 경우(일본, 이탈리아 등), 다른 독립기관이 하는 경우(프랑스 등)등이 있다.

최근 체신예금의 경향은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민간저축기관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저축과 관련서비스들이 취급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온라인에 의한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체신예금제도가 잘 발달되고 개인금융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프랑스의 체신예금과 대체를 중심으로 체신금융의 현황과 전산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체신금융의 개요

1. 연혁

프랑스의 체신예금제도는 1881년 수립되어 1882년 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국가의 자본으로 설립되어 체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민저축금고(Caisse Nationale d'Epargne)에 의해 전국의 우체국을 통하여 취급되고 있다.

체신부장관은 국민저축금고의 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또 체신부는 예금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한다. 국민저축금고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재무상의 독립성도 갖고 있지 않다. 체신예금업무는 우편대체업무(체신수표업무)와 함께 체신부의 한업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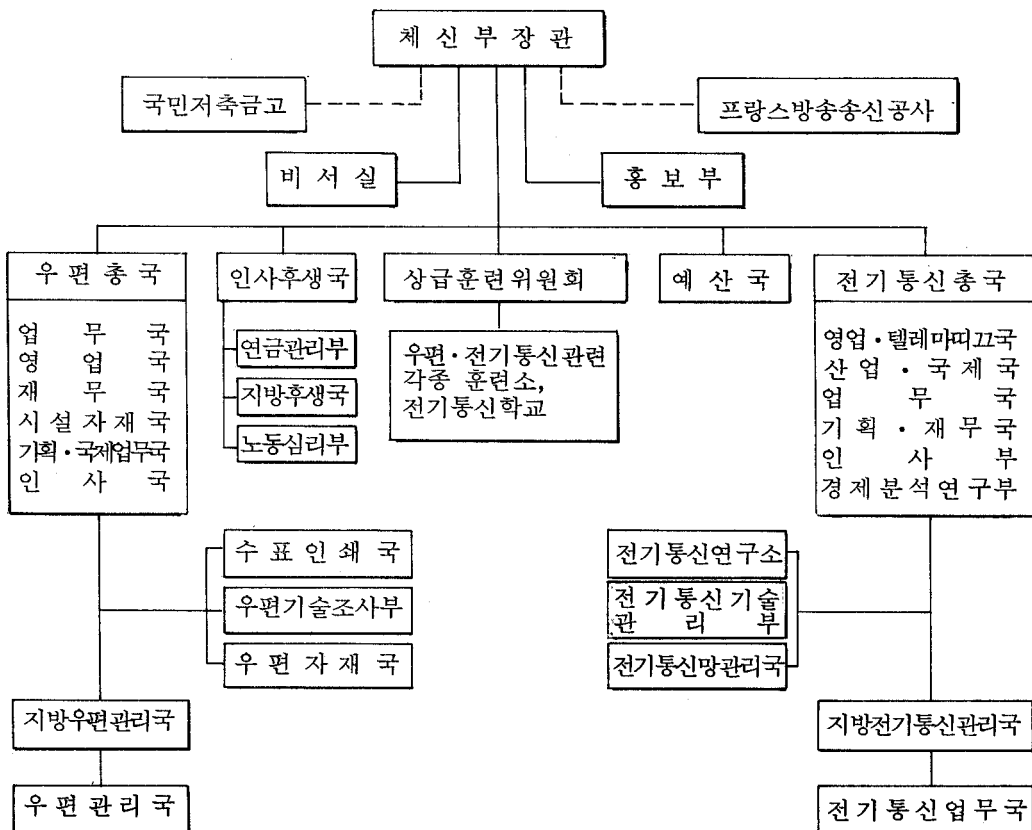
그 중앙기관은 체신부 우편총국이다.

또한 프랑스의 우편대체업무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어 제1차 세계대전말기인 1918년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당시 프랑스가 전쟁으로 인한 은행권의 발행을 초래하여, 우편대체업무를 도입함으로써 통화의 유통량을 감소시킬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우편대체업무는 우편전기통신법(Code des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체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성된 자금은 국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직

프랑스의 체신예금 및 우편대체업무는 체신부장관을 경영의 최고책임자로 정부의 한 부처인 체신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프랑스 체신부의 조직은 [圖 1]과 같

[圖 1] 프랑스 체신부의 조직



자료: 일본 우정성, 『서구의 우편저금 기계화의 진전과 고객서비스』, 1986. 9.

으며, 이 조직도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 체신부는 체신예금, 환, 대체를 포괄하는 우편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을 두 지주로 종합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것 외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감리를 하고 있다. 체신예금업무는 국가의 자본으로 설립되어 체신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민저축금고에 의해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취급기관으로는 18,000여 우체국과 18개의 지방저금국이 있다. 한편 교통이 불편한 벽지에서는 우편집배원을 통한 예금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3. 업무개요

가. 체신예금업무

프랑스 체신예금의 종류는 크게 보통예금, 주택예금, 증권예금 및 국채업무 등이 있다. 보통예금에는 A 통장, B 통장, 서민통장, 산업개발계좌가 있고, 주택예금에는 적립식주택예금과 통장식주택예금이 있으며, 증권예금에는 투자신탁예금과 투자공동펀드가 있다. (〈표 1〉 참조)

〈표 1〉 프랑스 체신예금의 종류

(1989년 3월 현재)

종 류	내 용	비 고
보통예금	A 통 장 가입대상 : 제한없음 예치범위 : 10 프랑 ~ 80,000 프랑 기 간 : 제한없음 이 자 율 : 연 4.5 %	비과세
	B 통 장 가입대상 : 제한없음 예치범위 : 10 프랑 ~ 무한 기 간 : 제한없음 이 자 율 : 연 2.39 % ~ 4.5 % (과세후)	과 세
	서 민 통 장 저소득층의 저축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품 가입대상 : 1988년 소득세 납부액 1,560 프랑 미만인 자 예치범위 : 200 프랑 ~ 30,000 프랑 기 간 : 제한없음 이 자 율 : 연 5.5 % + 생계비지수에 따라 조정부분	1989년의 경우 비과세
	산업개발계좌 기업의 설비자금을 목적으로 한 자금조성을 위한 예금 가입대상 : B 통장 가입자 예치범위 : 10 프랑 ~ 10,000 프랑 기 간 : 제한없음 이 자 율 : 연 4.5 %	비과세
주택예금	적 립 식 저리의 주택자금용자를 목적으로 한 예금 예치범위 : 1,500 프랑 ~ 300,000 프랑 기 간 : 5년 이 자 율 : 4만프랑까지 연 6.00 % 4만프랑초과 연 4.62 %	이자, 장려금포함 "
	통 장 식 저리의 주택자금용자를 목적으로 한 예금 예치범위 : 750 프랑 ~ 100,000 프랑 기 간 : 제한없음 이 자 율 : 연 2.75 ~ 4.00 %	장려금불입에 따라

종	류	내	용	비	고
증권예금	투자신탁예금 (13종의 상품)	예금자들로부터 자금모아 주식·채권등에 투자, 수익분배 단기 상품 3종: 3개월~2년 중기 상품 2종: 2년~5년 장기 상품 5종: 5년이상 중장기상품 3종		'86~'88 수익률평균 연 7% 내외 " 연 16% 내외 " 연 12% 내외 " 연 9% 내외	
	투자공동펀드 (5종의 상품)	단위형의 투자신탁 단기상품 1종: 3개월~12개월 중기상품 4종: 2년~4년		" 연 9% 내외 " 연 13% 내외	

자료: 1989년 프랑스 국민저축금고 발행 각 예금상품 안내자료

1) 보통예금

가) A 통장, B 통장(Livret A, Livret B)

A 통장과 B 통장은 보통예금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A 통장은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B 통장은 이자가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최저예치금은 10프랑으로 같으나 예입한도는 A 통장이 8만 프랑으로 제한되어 있고 B 통장은 무한으로 제한이 없다. 이자율은 연 4.5%이다. (B 통장의 과세후 이자율은 연 2.39%~4.5%이다.)

나) 서민통장(Livret d'epargne populaire)

서민통장은 저소득층의 예금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율에 물가연동부분을 부가한 것이다. 서민통장은 1982년 6월부터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취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장미예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그러한 별칭을 갖게된 이유는 이 예금이 미테랑 사회당정권에 의해 시작되어 사회당의 상징인 장미색을 통장표지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금의 가입대상은 1989년의 경우에는 1988년 소득세 납부액이 1,560프랑미만인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저예치금액은 200프랑 예치한도액은 3만프랑으로 되어 있다. 이자율은 연 5.5%에 생계비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된 이자율을 가산한다.

다) 산업개발계좌(CODEVI 예금)

산업개발계좌는 기업의 설비자금을 목적으로 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1983년 10월에 시작된 예금이다.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B 통장고객으로 하며 최저예치금은 10프랑 예치한도는 1만프랑으로 되어 있다. 이자율

은 연 4.5%이며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에게는 A 통장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2) 주택예금

주택예금은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예입을 하는 적립식주택예금과 예입을 임의로 할 수 있는 통장식주택예금이 있다. 적립식주택예금은 1,500프랑, 통장식주택예금은 750프랑이상을 불입하면 어느 우체국에서나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예치한도액은 적립식주택예금이 30만프랑, 통장식주택예금이 10만프랑으로 되어 있다. 이자율은 적립식주택예금이 이자와 장려금을 포함하여 4만프랑까지 연 6.00%이고 4만프랑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4.62%이며, 통장식주택예금은 장려금불입에 따라 연 2.75%~4.00%이다.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통장식은 계좌개설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적립식은 계약기간(4년이상)이 만료되어야 한다. 대부대상은 주택의 신축, 구입, 증개축, 수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최고 40만 프랑까지 대부된다. 변제기간은 2년부터 15년사이이다. 또 대부시에는 예입이자와 동액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대출상한 40만프랑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이 좀 더 높아진다.

3) 증권예금

가) 투자신탁예금(SICAV 예금)

투자신탁예금은 많은 예금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예금공탁금고의 관리하에 있는 GSF (Gestion des

Societes Financieres)의 금융전문가가 예금자를 대신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예금자에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989년 3월 현재 13종의 상품이 있으며 기간별로는 3개월~2년 정도의 단기상품 3종, 2년~5년정도의 중기상품 2종, 5년 이상의 장기상품 5종, 나머지 3종은 중장기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최근 2~3년간의 배당을 포함한 평균총수익률은 단기상품의 경우 연 7% 내외, 중기상품은 연 16% 내외, 장기상품은 연 12% 내외, 중장기상품은 연 9% 내외로 나타나 있다.

나) 투자공동펀드(SICAV et fonds communs de placement)

투자공동펀드의 구조는 투자신탁예금과 거의 같다. 투자신탁예금이 추가형(오픈형)으로 자금설정후에도 판매에 상응한 자금이 기금에 추가되는 것에 비하여 투자공동펀드는 한번 설정된 펀드에 자금의 추가를 하지 않는 단위형의 투자신탁이다. 1회의 펀드는 1억프랑까지이다. 1989년 3월 현재 5종의 상품이 있으며 기간별로는 3개월~12개월의 단기상품 1종, 2년~4년의 중기상품이 4종으로 되어 있고 최저예치금액은 6,000~10,000프랑이다. 최근 2~3년간 배당을 포함한 평균 총수익률은 단기상품이 연 9% 내외, 중기상품은 13% 내외로 나타나 있다.

4) 기타업무

이외에 프랑스 우체국에서는 예금자를 위하여 국채, 채신부채, 철도채, 전기·가스 등의 공공채의 판매 및 보관업무와 연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예금계좌에 예입하고 지급하는 대체예입제도나 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을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하는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우편대체업무

프랑스의 우체국을 통하여 제공되는 대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계좌의 개설

대체계좌의 개설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6세 이상인 자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며 가능하다.

계좌개설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수표장은 계좌개설자에게 동기우편으로 송부된다.

2) 입금

우체국에 대해서 입금환 또는 입금의뢰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 또는 다른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인출

창구단말기(CHEOPS)가 있는 우체국에서는 1일 3,000프랑까지 창구단말기가 없는 우체국에서는 1주당 3,000프랑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벽지에서는 우편집배원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4) 대체

계좌가입자가 채신수표에 대체금액, 수취인의 주소, 이름, 계좌번호, 채신수표센타명 등을 기재하여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채신수표센타에 채신수표를 직접 송부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계좌가입자에 대한 대체의 청구에 있어서 대체를 의뢰하는 가입자는 대체총액에 상당하는 채신수표 1매를 작성하여 채신수표센타에 송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5) 대월

1970년부터 승인되어 최고 5,000프랑까지 서비스 된다

다. 자금의 운용

채신예금으로 예입된 자금의 약 90%는 예금공탁금 고에 예탁되고 나머지 10% 정도는 일상의 지출에 필요한 부분으로 국고의 당좌계정에 예탁된다. 예금공탁금 고에 예탁된 자금은 주로 다음의 용도에 이용된다.

- 첫째, 국채 및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둘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사업체, 도시공동체 등의 대부 또는 그 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셋째, 프랑스 부동산은행, 국민은행의 채권매입 및 대부
- 넷째, 프랑스 증권거래소 상장증권의 매입
- 다섯째, 주택예금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국민저축금

고가 인정하는 대부예의 용자
여섯째, 주택예금대부에 따른 추가대부예의 용자

경우는 매우 만족스러우나 증권저축의 경우에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Ⅲ. 체신금융의 현황

1. 개요

프랑스의 체신금융서비스는 증권저축, 지불수단 등
의 새로운 영역에서 저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새롭게 하
고, 젊은층의 고객을 확보하며 기존의 고객에 대한 서
비스를 더욱 충실히 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1987년 말 현재 체신금융을 통한 자금조성액의 잔고
는 약 4,810억프랑에 달하였다. 이처럼 자금조성액규
모가 커짐으로써 체신금융으로서는 금융서비스활동의
증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그러한 금융서비스 증
대를 위해서 독특한 조직과 가장 최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1987년의 체신금융서비스활동의 성과는 영역에 따
라 큰 차이가 있다. 보통예금, 주택예금 및 대체계좌의

2. 체신예금

가. 보통예금

1987년은 보통예금(A 통장, B 통장, 서민통장, 산
업개발계좌)의 입지가 재정립된 해였다. 보통예금의
자산고(예금잔고와 연중 자본화된 이자포함)는 1986년
말 2,805억프랑에서 1987년말 2,923억프랑으로 증가한
반면, 예입에 대한 인출의 초과액은 1986년말 1,130억
프랑에서 1987년말 현재 4억 5,500억 프랑으로 크게 감
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87년의 A 통장 한도액의
상승(72,000프랑에서 80,000프랑으로), 2/4분기의 적
극적인 영업활동 및 연말의 증권시장 침체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A 통장의 계좌수는 1987년중 약 2% 증가하
여 1987년말 현재 1,780만계좌에 달하였고 서민통장 및
산업개발계좌의 수도 1987년중 각각 4.8%, 6.0%의
만족스런 증가를 보였다. (〈表 2〉 참조)

〈表 2〉 보통예금의 이용추세

(단위 : 천 계좌, 백만프랑)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¹⁾	증가율 ('86~'87)
A 통장 및 B 통장						
계 좌 수	16,860	17,148	17,438	17,754	18,227	2.7 %
연 말 자 산 고 ²⁾	240,019	256,035	264,653	265,724	276,555	4.1 %
순 예 입	2,246	-433	-6,586	-11,571	-684	
시 장 점 유 율 ³⁾	26.8 %	27.2 %	27.2 %	27.0 %	27.2 %	0.7 %
서 민 통 장						
계 좌 수	377	401	420	436	457	4.8 %
연 말 자 산 고 ²⁾	5,276	7,651	8,958	9,745	10,519	7.9 %
산 업 개 발 계 좌						
계 좌 수	277	462	524	569	603	6.0 %
연 말 자 산 고 ²⁾	2,340	4,157	4,740	5,043	5,268	4.5 %

자료 : La Poste, La Poste Française en 1987, 1988.

주 : 1) 잠정치

2) 연중 자본화된 이자 포함

3) 국내에서 조성된 같은 종류의 총저축 대비

나. 주택예금

1987년말 현재 주택예금(적립식 및 통장식)의 자산고는 1986년에 비해 15.5%가 증가하여 약 246억프랑에 달했고 계좌수는 6.1%가 증가하여 약 75만 계좌로 증가하였다. 대부는 총 29,647건으로 금액으로는 1986년에 비해 2.6% 증가하여 총 233억 프랑이었다. 추가대부의 건수와 약정추가대부의 건수는 1986년에 비해 각각 45.3% 증가 및 10.0% 감소를 보여 1987년의 추가대부는 4,373건에 6억 2,320만프랑이었고, 약정추가대

부는 1,236건에 2억 3,160만프랑이었다. ((表 3) 참조)

다. 증권예금

투자신탁예금과 투자공동펀드는 1984년이후 강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1987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순예입은 1986년 103억프랑에 비해 1987년 47억프랑으로 54%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1987년 증권시장의 침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表 4) 참조)

〈表 3〉 주택예금의 이용추이

(단위 : 천건, 백만프랑)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¹⁾	증가율 (’86~’87)
통장식 주택예금						
계 좌 수	264	281	304	335	367	9.5 %
연 말 자 산 고 ²⁾	5,011	5,213	5,717	6,300	6,934	10.1 %
적립식 주택예금						
계 좌 수	293	310	337	369	379	2.8 %
연 말 자 산 고 ²⁾	9,061	10,317	12,542	15,038	17,640	17.3 %
시 장 점 유 율 ³⁾	6.4 %	6.2 %	5.9 %	5.7 %	5.5 %	-3.5 %

자료 : 상계서

주 : 1) 잠정치

2) 연중 자본화된 이자 포함

3) 국내에서 조성된 같은 종류의 총저축 대비

〈表 4〉 증권예금의 이용추이

(단위 : 천건, 백만프랑)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¹⁾	증가율 (’86~’87)
투자신탁예금						
위 탁 주 식 수	8,847	12,291	17,294	25,118	29,275	16.5 %
계 좌 수	168	271	475	813	945	16.2 %
주식의 자본가치	3,041	6,415	14,772	27,253	28,330	4.0 %
투자공동펀드						
계 좌 수	7	8	9	22	22	
주식의 자본가치	218	257	322	731	490	-33.0 %

자료 : 상계서

주 : 1) 잠정치

3. 우편대체업무

1987년말 현재 대체계좌수는 1986년에 비해 3% 증가하여 831만계좌로 늘어났다. 이 결과는 해지계좌가 전년 대비 2.9% 증가한데 비해 신규계좌가 16.3% 증가된데 힘입은 것이다. 1일평균 체신수표의 이용액은 1986년 1,194억 프랑에서 약 5.6% 성장하여 1,260억 프랑으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같은 기간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3.1% 보다 훨씬 높은 성장이었다. 실현된 거래건수는 1987년 약 25억 6천만건으로 1986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체신수표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와 국제를 포함한 환발행을 보면 환의 이용이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전산화와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환이 보다 편리한 수단으로 대체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5〉 참조)

〈表 6〉 우편대체의 이용추이

(단위: 천건, 백만프랑)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¹⁾	증가율 ('86~'87)
체 신 수 표						
계 좌 수	7,662	7,759	7,862	8,027	8,277	3.1 %
1일평균이용액 ²⁾	102,788	107,403	113,111	119,360	126,035	5.6 %
치 리 건 수	1,983,216	2,244,957	2,329,567	2,376,347	2,556,995	7.6 %
은행창구대비 예치금총액의점유율	14.6 %	14.0 %	14.2 %	13.9 %	13.6 %	-1.7 %
환발행(국내, 국제)						
건 수	137,122	120,304	108,769	100,439	95,867	-4.6 %
금 액	953,095	951,332	801,882	776,272	827,918	6.7 %

자료: 상계서

주: 1) 잠정치

2) 공공기관 계좌 제외

4. 기타업무

가. 국가간 체신수표 교환업무

국가간 체신수표교환업무는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특히, 체신수표로 지불될 수 있는 한도액이 1986년 750프랑에서 1,200프랑으로 대폭 증가되어 건수로는 줄었으나 지불총액은 증가하고 있다. 1987년 프랑스 체신수표의 지불서비스 대상국에 헝가리와 태국이 추가됨으로써 전체지불국 수는 29개국 이 되었다. 반면에 해외의 발행국수는 가입국이 9개국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表 6〉 참조)

〈表 6〉 체신수표 국제거래 이용추이

(단위: 천건, 백만프랑)

구 분	1986	1987	증가율
외국에서 지불된 프랑스 체신수표			
건 수	571	465	1)
금 액	367	413	13.8%
프랑스에서 지불된 외국의 체신수표			
건 수	1,527	1,447	1)
금 액	1,082	1,273	17.6%

자료: 상계서

주: 1) 1건당 한도액의 증가로 의미가 없다.

나. 국제환·대체업무

1987년 외국인에 지불되는 수당을 월급제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국제환 발행수가 전년에 비해 약 17% 증가했다. 반면 금액으로는 1986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체에 있어서는 다른나라로 지불되는 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1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나라에서 수취되는 건수는 거의 변함이 없다.

다. 환전

1987년 외국은행권과 여행자수표의 환전서비스는 218개소의 소위 1종기관에서 취급된다. 1종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1,800개소의 2종우체국에서는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나 처리시간이 좀 더 걸린다. 거래량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7년의 거래는 1986년에 비해 건수로는 23%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32%가 증가했다.

또 1984년 1월부터는 외국인방문객들이 비자카드나 유로체크(Eurocheques)로서 현금을 프랑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약 1,000개소의 우체국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1984년부터는 서독과의 협정에 의해 서독시민들이 특정한 프랑스우체국에서 그들의 체신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여, 1987년에는 약 1,500개의 우체국에서 153,000건의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37% 증가)

IV. 체신금융의 전산화

1. 전산화의 경위

프랑스 체신예금의 전산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업무의 전산화는 예금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전하였다.

가. 체신예금업무의 전산화

프랑스 체신예금업무 전산화의 역사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881년 체신예금업무가 도입되고 통장식 예금업무가 시작되었다.

1959년 후선업무에서 부터 전산화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계좌수 약 100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종은 IBM 650(진공관식)을 사용하였다.

1960~1961년 계좌수 900만~1,000만을 대상으로 프랑스 전국의 계좌관리를 시작하였다. 기종은 IBM 7070(트랜지스터식)을 사용하였으며, 단말기 및 자기디스크로 처리하였다.

1968년 자기테이프를 도입하여 자동대체업무를 시작하였다. 예금사무센터 사이의 연락이 종이 테이프에서 자기테이프로 바뀌었으나 수송은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76년 낭뜨에서 창구단말기(CHEOPS)의 도입을 위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주전산기(host computer)는 IBM을 사용하였다.

1977년 낭뜨에서의 창구단말기 실험을 확대하였다. 용도는 잔고조회 및 자료의 전송이었으며, 단말기는 LOGABAX사 및 CGA사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1978년 주택예금의 전산화취급이 시작되었다.

1982년 예금업무 종합전산화계획(CERES)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전국규모로 창구업무를 취급하고, 전국적인 자료의 조회망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서민통장의 전산화취급이 시작되었다.

1983년 산업개발계좌의 전산화취급이 시작되었다.

나. 우편대체업무의 전산화

우편대체업무의 전산화는 주로 후선업무에 대한 전산화이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1964~1980년)

최초의 후선업무전산화는 1964년 루앙체신수표센터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도입이었다. 1972년까지 14개소의 체신수표센터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그 도

입시기에 따라 자료의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초기에는 천공카드와 자기테이프에 의한 방법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작업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기억장치로서 자기디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후기에는 자료의 입력을 천공카드에 의하지 않고 단말기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2) 제2단계(1980년 이후)

이전까지는 기술진보에 따라 그 때마다 방식을 개량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무당국에서 계좌의 변동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이 통일된 방식은 파리방식(Méthode Paris j+1 total : 익일 처리완료방식을 의미한다)이라 불리우며, 창구단말기 망을 이용한다.

주전산기는 BULL 사의 것과 IBM 사의 것이 이용되었다. 동시에 체신수표센타의 전산화도 이 방식을 따라 진행되었다. 수표는 센타의 단말기(IBM 5933)를 이용하여 입력하여 처리된다. 기업의 대량의 거래 또는 자동대체 등은 자기테이프를 체신수표센타에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 이러한 파리방식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2. 전산화의 현황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산화는 구좌의 관리시설(국민저축금고와 체신수표센타)뿐만 아니라 연결망에 까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창구단말기를 우체국창구에 도입하는 것과 함께 파리19우체국 등 11개국의 창구에 마이크로컴퓨터를 도입하였으며 창구단말기 및 마이크로컴퓨터도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비스질의 향상(수속의 간소화, 망의 구성)
- 둘째, 작업환경의 개선(단순반복작업처리 용이, 직무의 내용개선)
- 셋째, 업무처리의 분권화를 진전시켜 우체국수준에서 관리
- 네째,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창구단말기 및 마이크로컴퓨터의 대상업무는 우체국에 있어서 창구업무와 후선업무(예금, 환, 대체, 우편업무 등)이다.

가. 체신예금업무

전통적인 예금업무처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예금업무 종합전산화계획(CERES)이 1985년에 끝난 뒤 예금업무처리의 개선은 여러측면에서 개선되었는데 그 주요원칙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거주자거래의 지역화 특히 창구단말기망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
- 둘째, 단말기가 없는 우체국에 대해서는 이자결산과정의 용이화
- 셋째, 수표조회터미널망의 확장
- 네째, 상업용 소프트웨어인 HERMES를 모든 지역에 확장

한편 1986년에 시작된 분산처리에 관한 연구는 1987년 예금센타의 모든 서비스(전통적인 예금, 대부, 유가증권)를 총괄하는 보다 넓은 틀(PTMF 계획: 다가능우체국 계획)내에서 수행되었다. 또 1987년은 서비스질과 국립저축금고의 종합적지표인 539 CNE 통계(Statistique 539 CNE)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해였다할 수 있다.

증권예금과 관련하여서는 1987년 6월부터 개방된 계좌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지방서비스를 일부지방에 신설하고 이를 위해 미니텔에 의해 주문망을 증권거래소와 연결하였다.

나. 우편대체업무

1986년 전산화활용방법의 단일화를 실현한 이후 대체업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두곳이던 체신수표의 분류, 교환결제소가 통합되었고 체신수표센타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 체신수표센타와 다른 기관과의 결제과정에서 가능한한 문서의 유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수표(image-cheque; 마그네틱선이 있음)의 도입으로

점차 문서의 유통을 대체할 것이다. 이미지수표는 이미지수표 지역거래센터(CREIC)에서 1988년부터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수표장의 발행, 보급, 자동갱신, 자동봉합 등 전산화에 의한 자동화가 1986년에 시행되어 1987년에 보편화 되었으며, 1987년 5월에는 광디스크에 계좌가입자의 서명을 보관하고, 조회하는 시스템의 서비스가 개시되어 서비스기능면에서 뿐아니라 작업조건에서 생기기될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9년말까지 10개 수표센터에 이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3. 전산망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인출기망(DAB)과 창구전산망(CHEOPS)이 구성되었다.

가. 현금인출기망

1985년 11월부터 은행카드그룹간 공동이용시스템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체국의 청색카드(Carte Bleue)소지자는 9,500여개의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에는 7개의 집중처리장치가 더욱 강력한 4개의 집중처리장치로 개편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망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더 한층 개선하였다. 1987년에는 또하나의 새로운 집중처리장치가 마르세이유에 설치되었다. (<表 7> 참조)

<表 7> 우체국의 현금인출기 설치

구 분	1986	1987	증가율
현금인출기	473	529	11.8%
국사의 현금인출기	236	309	30.9%
계	709	838	18.2%

자료 : 상계서

한편 현금인출카드(24/24카드)이용은 우체국의 신용카드이용이 늘어나면서 감소하고 있는데, 우체국의 신용카드는 국내용, 국제용 및 VISA 카드 등으로 구분되며 1987년말 현재 100만매가 넘는 카드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우체국의 현금인출기망을 통해 이루어진

예금인출건수는 3,000만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8> 및 <表 9> 참조)

<表 8> 우체국카드의 이용추이

(단위 : 천매)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청색카드	7	148	398	805	1,033
현금인출카드	2,020	2,400	2,405	2,183	2,097

자료 : 상계서

<表 9> 청색카드의 구성(1987년말)

구 분	매 수
국제용 청색카드	575,584
국내용 청색카드	456,162
VISA 카드	1,394
계	1,033,140

자료 : 상계서

나. 창구전산망

우체국창구에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체신예금 및 대체 이용자의 계좌에 실시간(real time)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계속 추진되어 1987년에는 1억 900만회의 처리(1986년 대비 20% 증가)가 이루어졌다. 창구전산망의 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설비들이 우체국의 전반적인 전산화라는 계획속에 통합되어 금융업무뿐 아니라 지역우편망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창구전산망은 1987년 2월 알자스(Alsace)의 주요 우체국들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센터에 연결됨으로써 완성되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만간 미니텔로 이용가능한 신규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특히 계좌의 부정환 사용을 막는 분야에서 번거로운 서류에 의한 처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창구전산망의 확충은 고객에 대한 1차적인 서비스의 개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表 10> 참조)

〈表 10〉 우체국의 창구단말기 설비

구 분	1986	1987	증가율
창구단말기를 갖춘 우체국	2,950	3,575	21.2 %
겸용 단말기 수	1,980	2,210	11.6 %
전용 단말기 수	2,051	2,038	-0.6 %
다기능창구단말기수(TMG)	.	650	.

자료 : 상계서

V. 전산화와 서비스 개선

1. 개요

체신금융서비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부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987년부터 다음의 새로운 조치들이 채택되어 시행되었다.

첫째, 창구전산망의 확대

둘째, 현금자동인출기망의 확장 및 설치장소의 확대 (1990년말까지 1,000여대의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및 7개의 집중처리기 확보)

특히, 1988년에는 각 기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망의 신뢰도와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고 처리시간이 짧아져 고객들에게 상담 등 다른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산화에 따른 서비스개선 및 그 효과를 보면

첫째, 창구단말기(CHEOPS)의 도입에 의해 각종 처리의 정확성이 증대되었다.

둘째, 대체의 전산화에 따라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특히 취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늘이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개발계좌(CODEVI)등 신종상품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째, 미니텔을 통하여 홈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서비스의 확충

가. 홈뱅킹서비스

앞에서 살펴본 전산화에 따른 서비스개선의 효과 중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미니텔에 의한 홈뱅킹서비스이다. 홈뱅킹 서비스는 영상우체국(VIDEOPOSTE)이라고도 불리우며 시험단계를 거쳐 파리 등 6개 도시에서 실용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서비스는 미니텔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계좌잔고의 조회, 대체, 수표장의 주문 등이 가능하다.

1986년 1월 현재 미니텔에 의한 홈뱅킹 이용자수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하여 약 29만명이고 이중 체신금융 이용자수는 약 12,000명 정도이다. 홈뱅킹서비스의 1인당 평균이용시간은 1개월에 20분 정도라 한다.

나. 카드서비스

프랑스체신부는 1986년부터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은행카드협회(Carte Bancaire)에 가맹하고 있다. 현재 다음의 카드들을 발행하고 있다.

- 1) CCP 24/24카드 : 언제든지 필요한 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로 대체계좌가입자에게 무료로 교부된다.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CCP 24/24 CD (1987년말 현재 529대)나 역구내 등에 설치되어 있는 CD (Point Agent : 1987년말 현재 309대)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1주일에 1,800프랑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 CCP 24/24카드와 체신수표를 제시하면 1주일에 3,000프랑까지 지불받을 수 있다.
- 2) CCP 24/24 plus 카드 : CCP 24/24카드의 기능에 은행카드협회 가맹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한 카드이다.
- 3) 청색카드(Carte Bleue) : 프랑스 체신부는 청색카드협회(Carte Bleue : 은행카드협회의 전신)에 가맹하여 대체계좌 가입자에게 청색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청색카드는 신용카드로서 국내(및 해외)의 상점, 호텔 등에서 지불을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수취할 수 있다. 청색카드는 국내

전용카드(Carte Bleue Nationale)와 외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국외용카드(Carte Bleue Internationale 및 VISA)의 두 종류가 있다. 카드는 배우자의 이름으로도 발행되며 그 경우 회비는 반액이다.

1986년 현재 카드발행매수는 CCP 24/24카드(CCP 24/24 Plus 를 포함하여)가 약 230만매, 청색카드가 약 20만매이다.

또, 1987년초에는 VISA 우대카드, 같은해 10월부터는 사용한도액이 낮은 “벼룩카드”로 불리는 국내청색카드의 발급이 각각 시작되었고, 신용카드로 카드공중전화기의 사용이 시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체신부는 젊은층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로서 오디세이(Odyssee)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986년 11월 13~18세까지의 체신부 직원자녀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다음해 4월 일반에 제공되었다. 이서비스를 통해 젊은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금전관리를 배울 수 있으며 우체국은 이들을 장래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은 아직 활발하지 않아서 1987년말 현재 19,572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3. 민간금융과의 제휴(결제업무)

가. 결제업무

대체 및 수표의 결제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자기태이프를 교환함으로써 교환결제 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한 연간취급고는 1986년 4,500만전에 달한다.

나. 은행카드협회(Carte Bancaire)에의 가맹

은행카드협회는 1967년 수표의 사무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신용카드협회(당시에는 Carte Bleue)로 발족하였다. 그후 점차 가입 금융기관이 늘어나 1971년부터는 CD의 공동이용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체신부는 1982년 이협회에 가입하였고, 1984년 농업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가 참여하여 프랑스 최대의 카드조직이 되었다. 1986년 현재 은행카드협회에 가입해 있는 기관은 11개에 달하며 전체적으로 약 7,000대의 CD를 보유하고 있다.

VI. 맺음글(우체국의 정보화)

프랑스 체신금융전산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체국의 정보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 체신부는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창구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며, 종사자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고, 제공업무를 다양화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파일럿(Pilote)우체국 계획을 내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1984년 10월부터 근대적 정보기기를 갖춘 정보화우체국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우체국에는 창구에 CHEOPS 단말기와 마이크로 컴퓨터를 설치하며 고객이 조작할 수 있는 미니텔을 로비에 설치하는 등 우체국의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다.

1986년 현재 9개의 파일럿 우체국이 건설되고 있으며 기존의 우체국들도 규모가 큰 우체국에서부터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1. 금융결제관리원, 「지급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향후 전망」, 1986. 9. (국제지급결제회의 발표내용).
2.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외국의 금융전산화 추진 현황』, 1987. 11.
3. _____, 『은행의 전산화 방향에 관한 연구』, 1989. 4.
4. 일본우정성, 『서구 우편저금 기계화의 진전과 고객서비스』, 1986. 9.
5. _____, 『우편저금의 개요』, 1977.
6. 일본은행조사통계국, 『외국경제조사 통계연보』, 1985. 10.
7. ISBI, Savings Banks International, 1990, Spring.
8. La Poste, La Poste Française en 1987, 1988.

〈부록〉 프랑스 민간금융기관 전산화의 배경

1. 프랑스 금융제도의 개요

프랑스 금융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종류별 취급업무의 영역구분이 명확하다.

둘째, 정부계 공공금융기관과 조합조직의 특수금융

기관의 비중이 크다.

세째,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에 참여하고 있다.

네째, 3대 국유은행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다섯째, 증권업무의 겸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 금융기관의 현황을 정리하면 〈表 1〉과 같다.

〈表 1〉 프랑스의 금융기관

구 분	명 칭	수	비 고
중앙은행	프랑스은행	1	1800년설립, 1848년부터 은행권 발행권 독점 1946년 국유화
은행	상업은행	357	1984년의 은행법에 준거하여 업무를 하는 은행
	프랑스무역은행	1	해외취급업무, 수출금융업무
조합은행	국민은행	195	조합 또는 상호조직의 특징을 갖는 금융기관
	전국농업신용금고	42	중소기업, 수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기관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1	농민, 영세수공업자 등 구성원에 대출
	협동조합중앙금고	1	개인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대출에 운용 비농업 각종 협동조합에 대출, 어음보증, 보조금 지급
저축금고		468	민간의 일반저축
시민금고		21	예금수신, 시의 보조금으로 가계에 단기대출
금융회사		882	상호보증조합, 부동산금융회사, 지역저축기관, 에너지금고, 할부판매금융회사, (7)장기신용은행 등
특수금융기관	프랑스부동산은행 크레딧내셔널 (Crédit Nationale) 중소기업설비금고	2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원조금고	1	주택건설에 따른 중장기 신용의 제공
	지역개발회사	1	기업의 설비자금제공을 주업무로 하는 중장기 신용기관
		1	금융기관차입, 채권발행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기 타	중권회사	1	금융기관차입, 채권발행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설비 금융
	예금공탁금고	15	일반회사, 관광업자, 농업경영자에 대한 대부
	국민저축금고	65	유가증권의 중개거래
	경제사회개발기금	1	국민저축금고의 자금관리, 사회보장관계 자금의 운용
	주택대부금고	1	우체국을 창구로 금융업무 취급
	중기신용조합유동화기금	1	경제계획에 기초한 장기자금공급
	1	금융기관차입, 국가의 보조금에 의한 주택건설, 지방공공단체등에 대한 대출	
	1	재정자금에 의해 주로 프랑스 부동산은행에 대한 대출을 한다.	

자료 : 일본은행조사통계국, 『외국경제조사 통계연보』, 1985. 10.

2. 민간금융기관 전산화의 배경

프랑스의 경우 고도정보화정책에 정부가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화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프랑스는 다른나라들과 비교해도 전체결제에서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1984년에는 약 48억건의 수표가 발행되어 전체 결제의 77.4%를 차지하였고 그 중 약 5억건이 소액수표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이처럼 막대한 수의 수표를 발행한 이유는 수표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고 100프랑까지의 수표는 부정수표가 아닌한 은행에 지불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일찍부터 결제처리의 자동화를 서두르는 배경은 이러한 수표를 처리하기 위한 은행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수표한통당 처리비용은 1978년 평균 5.85프랑에서 전산화로 1982년에는 평균 3.14프랑까지 감소되었고, 자동대체비용은 1982년 한 건당 평균 1.01프랑이다. 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니텔을 이용한 홈뱅킹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다.